www.ftc.go.kr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범답변

2024. 10.

FAIR TRADE 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Contents

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

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5

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6

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66

0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78

06. 소비자기본법 ····· 84

07.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90

0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97

0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00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0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106

01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지주회사 비계열회사 관련 질의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은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 진행 중에 있으며, 신고 도중 관련 법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계열회사 주식을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위 조문에서 괄호안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발생하는지?
   ex) 5% 초과하는 주식 처분 명령 등

2. 괄호안의 내용 중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 산정 시 5%미만 소유 법인들도 합산하는지?

3. 5% 초과 소유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5%는 괜찮은지?

4. 5% 미만으로 다수의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 주식가액의 15%를 초과한 경우 행위제한에 해당하는지?

5. 비계열회사 주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 포함하는지?

6.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은 지주회사 감사보고서의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 투자주식 상 장부가액으로 파악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청하여 주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 제한 규정의 내용 및 위반시 예상되는 처분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비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으로, 국내 비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국내 비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 대비 15% 미만인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해 보면 유선상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위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의 시정조치 및 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법 제124조(벌칙)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단서규정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국내 비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산정 시, 지주회사가 발행주식의 5% 미만을 소유하는 비계열사의 주식가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국내 비계열사 지분 비율은 비계열사 별로 각각 산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비계열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하 범위에서 소유하고 있다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비계열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더라도 행위제한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비계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Ⅱ. 2.를 준용하여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6. 본 답변 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내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본 민원과 관련하여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지주회사팀)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2.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5호, 2022. 12. 9., 일부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드립니다.

민원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5호 부당한 지원행위위 심사지침 중 [나.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해당 내용에서 부동산 정상가격이 해당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만일 다른 산출 방식이 있다면 해당 근거도 첨부 부탁드립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3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5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중

Ⅲ.3.나. 정상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의 종류, 규모, 위치, 임대시기,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형성되었을 임대료로 하되,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다.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이자율은 임대인이 정한 이자율이 없거나 정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

* (부동산 정상가격의 50/100)×임대일수×정기예금이자율/365 = 해당기간의 정상임대료

이 부분에서 부동산 정상가격이 해당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인지 여부와 만약 아니라면 다른 산정 기준 유무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을 기초로 검토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사지침 중 정상임대료를 구하는 계산식에서 부동산 정상가격은 해당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심사지침에서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가격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해당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은 심사지침 Ⅲ.2.다. 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의 정상가격 산출 방식으로 이는 Ⅲ.3.나.의 부동산 정상가격 산출 방식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Ⅲ.2.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4. 이상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정상가격의 공시지가 여부와 산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 따라 다른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3.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시 부당한 지원행위

민원내용

5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시행되는***주소*** 33에 소재한 ○○마을 2단지 ○○아파트 승강기교체 공사와 관련 본 아파트 2*** ***호에 거주하는 김** 본인은 첨부된 녹취록에 의거하여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수의계약 조건에 대하여 김**동대표회장에게 확인한바, “기존에 표준화된 사양보다도 더 좋은 사양을 해 달라” “승강기 예를 들어서 내장재를 보통 A급으로 해준다. 그런데 그것을 특A급으로 해 달라” 고 요청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승강기교체 공사는 주민 모두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100%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70,000,000원이 포함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마을 2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기뻐할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된 부분과 수의계약 조건에 관한 내용은 전 주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김**대표회장이 녹취록에 기록된 “표준화된 사용보다 더 좋은 사양”과 “특 A급”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 11일에 본 아파트 2*** ***호에 거주하는 주민 김**이가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6일 계약하고 2023년 4월 26일 경정된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김** 동대표회장이 녹취록에서 말한 “더 좋은 사양” “특 A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만일, “표준화된 사용보다 더 좋은 사양” “특 A급” 재질로 공사를 해 달라는 수의계약을 구두 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분명 부당한 지원행위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엘리베이터와 수의 계약 시 최초 제출 받은 견적서와 그 이후 “표준화된 사용보다 더 좋은 사양”“특 A급” 재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안내문을 작성하여 2023년 6월 16일(금)까지 입주민들에게 우편함을 통하여 가가호호 배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분명 아무리 주민들을 위하여 일을 한다 한들 수의계약 이후 모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들 모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수의계약 조건 또한 구두계약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는 분명 부당한 지원행위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 공사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및 두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에 대한 담합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 후 그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하신 신고서 내용은 ○○마을2단지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신고인”이라 합니다)가 ○○엘리베이터와 특A급 자재 등 계약조건을 입주민들이 모르게 수의 및 구두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것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귀하는 신고서에 동대표회장 김○○을 피신고인으로 기재해주셨으나,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교체공사 계약서상 계약체결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를 피신고인으로 하여 답변드립니다.

3. 먼저, 피신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며, 귀하의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우리 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규제는 관련시장에서 한계기업이 존속하여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억제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폐해 및 특정 회사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자 2001헌가25 결정 참조)

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지원행위의 부당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ㅇ 지원행위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지원행위로 인하여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증됩니다.

라. 귀하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신고인의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규율하기는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첫째, 앞서 말씀드린 부당지원 행위의 성립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피신고인이 ○○엘리베이터와 수의 및 구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즉시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둘째, 계약체결 방식이 수의 및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인한 경제상 이익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관련시장 내 한계기업의 퇴출 방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등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 참고로,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보고·제출 명령 등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등에게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바. 한편, 현재 귀하가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담합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하므로, 우리 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로 신고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신고내용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4. 부당지원 안전지대 관련 법 45조와 47조의 차이?

민원내용

특수관계인(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시
① 법 45조 1항9호 관련된 '부당지원 심사지침'에서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
② 법 47조 1항의 행위 유형인 시행령 54조 별표 3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와 100분의 7 미만이고 연간 200억 미만인 경우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결국 계열사와 거래시 부당지원, 상당히 유리한 조건 판단시 두 조항이 모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연간 거래액은 100억 기준인지, 200억 기준인지요?

100억 이상 : 두 조항 모두 해당
100~200억 : 47조만 해당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310-*******/2AA-231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5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부당지원 심사지침') 중
Ⅲ.4.가.6)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이하 '지원행위 안전지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 [별표3] 중

[별표3] 1. 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다만,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의 경우에는 2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지원행위 안전지대 조항과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 관련하여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총액에 따른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질의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을 기초로 검토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귀하께서 질의한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가 지원행위 안전지대 조항,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에 모두 해당하려면 해당 상품·용역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9호(이하 '부당지원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7조(이하 '사익편취 금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둘 이상의 계열사가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의 '지원주체', '지원객체' 요건과 사익편취 금지 조항의 '제공주체', '제공객체' 요건을 만족하며, 상품·용역 거래가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의 '지원행위' 요건과 사익편취 금지 조항의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만족할 때 안전지대 조항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하 답변에서는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가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 사익편취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는(이하 '특정 상품·용역거래) 가정 하에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5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제435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원행위 안전지대 조항,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 관련하여 특정 상품·용역거래의 안전지대 적용 여부는 조항별로 판단합니다. 즉, 지원행위 안전지대 조항,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을 각각 적용하고 해당 거래가 안전지대에 해당한다면 지원행위 안전지대 조항의 경우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의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안전지대 조항 적용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격와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 부분과 '연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 부분은 동시에 해당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상품·용역 거래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에서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가 100분의 7 미만이고')

1)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행위 안전지대,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 각각 검토
2)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경우: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 검토
3)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지대 조항 해당 없음

이상 세 가지 경우가 도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상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원행위 안전지대 및 이익제공행위 안전지대 조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 따라 다른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5.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 관련 문의의 건(개정 심사지침)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주사와 계열사(동일인 지분 20% 이상) 간 상품용역 거래 (용역거래에 따른 대금 20억이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1)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거래대가 차이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부당한 지원행위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는바, 상기의 전제에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해당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여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이때, (2) 용역계약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또한, (3) 상당한 규모의 상품용역거래의 안전지대로서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 아울러 상기 부당지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른 사익편취행위가 될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311-*******/2AA-231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5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부당지원 심사지침') 관련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사와 계열사(동일인 지분 20% 이상)간 상품·용역 거래(대금 20억 이하의 용역 거래)를 진행할 경우

   1)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에 해당할 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검토할 필요 없이 해당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여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이때 용역계약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3) 상당한 규모의 상품·용역거래 안전지대로서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라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4) 상기 부당지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른 사익편취 행위가 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이상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을 기초로 검토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당지원 심사지침에 의거,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당지원 심사지침에서는

   Ⅱ. 4. "지원행위"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거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심사지침에서 같다)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Ⅳ. 1. 가. 지원행위에 대한 부당성은 원칙적으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신용등급의 변화정도,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러한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지원행위에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상 “지원행위”와 “부당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주체-지원객체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지원행위성“)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면 이차적으로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원행위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부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부당지원 심사지침 Ⅲ. 4. 가. 6)*은 상품·용역 거래의 지원행위 안전지대 조항으로 해당 거래가 안전지대 범위 안에 해당하면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의 검토 여부와 수의계약 형태는 지원행위성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주사-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가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면 지원행위성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추측되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35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6)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에 거래된 상품 · 용역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정상가격의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 · 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그리고 이때 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당지원 심사지침 Ⅲ. 2. 다.** 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다. 정상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출한다.

1)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3)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이 경우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 제1절(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산거래 과정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2미만인 경우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 안전지대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용역거래가 안전지대 범위 안에 해당한다면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부당한 지원행위 요건과 사익편취행위, 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이 상이한 관계로 귀하의 가정만으로 그 해당 여부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이상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부당지원 심사지침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 따라 다른 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길 바라며 본 답변으로 해소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6. 공정거래법 제 18조 2항 3호(일반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제18조 2항 3호 (일반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제3호에 따르면 비계열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경우 행위제한이 미적용됩니다.
이때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15% 산정기준이,

1) 종속자회사 및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지분가치까지 포함하는지,

2) 지분가치 산정시 준용 기준이 장부가액인지, 순자산가액인지

해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 행위제한규정에서의 “자회사 주식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자회사의 요건으로 ①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이며, ②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 수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 중 최다출자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지주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규정을 토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의 "자회사 주식가액"이란 지주회사의 감사보고서 상에서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민원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본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7. 담배 신제품 출고에 대한 부당한 사례

민원내용

담배소매인입니다. 담배제조공급사인 ○○○와 ○○○담배 회사는 신제품을 생산 출고 시마다 특정업체(편의점의 체인점)에만 수개월을 선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 전국 모든 담배소매인 점포에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체인점에 속한 점포에만 우선공급함으로서 체인점포에만 이윤을 몰아주고 체인점으로만 손님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체인점이 아닌 전국의 영세 소매인들에게는 심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판매방식을 수년동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불공정한 방법을 고수하는 이면에는 부정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로 유추되기도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신 후 시정조치와 부정한 거래가 있는지의 수사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민원인 ㈜○○○와 한국○○○㈜가 자신의 신제품을 일반소매점에는 공급하지 아니하고 대형 편의점에만 공급하는 것이 부당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1.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거래조건차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2.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조건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조건차별로 인해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거래조건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87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고)

4-1. 피민원인 ㈜○○○에게 확인한 결과, 신제품의 경우 시장성 확인과 판매 부진시 발생하는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주소*** 대량생산이 어렵고, 테스트 마케팅(Test Marketing) 차원에서 제품의 일일 판매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편의점을 통해 선출시한 후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여 1~6개월 이후 추가생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판매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일례로, 올해 출시한 8종의 제품 중 3종은 추가생산을 결정하여 일반소매점에도 공급하고 있으나, 5종은 단종 결정되어 현재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해당 제품이 아직 편의점가맹점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이는 편의점 본사에 남아있던 재고로 추정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4-2. 피민원인 한국○○○㈜에게 확인한 결과, 신제품의 경우 생산설비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부득이하게 회사 내부 기준(매출실적 등)을 정하여 편의점본사* 또는 일부 소매점에 우선 공급하였으며, 올해 초 일부 신제품에 대한 공급난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2023년 8월 이후 공급난이 해소되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제품(궐련형, 전자형)에 대하여 모든 소매점에게 공급할 수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 편의점본사는 중앙물류로 일괄 매입 후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공급함

4-3. 즉, 피민원인들이 일반소매점을 특정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기준에 따라 판매처 별로 공급시기에 차등을 두고 있는 점, 피민원인이 편의점에 우선 공급하는 것은 신제품의 시장 반응을 살펴 공급량을 확대할 것을 결정하는 피민원인의 경영상의 판단으로 그 사유가 불합리

하다고 보기 힘든 점, 피민원인의 행위가 경쟁을 저해할 의도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민원인의 행위에 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법에 적시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규제가 가능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 제보가 있으시거나 답변내용에 보완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8.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민 자부담금 일부 지원 부당한 공동 행위

민원내용

전북 군산시 ○○○농협이 조합원에게 보낸 「2023년 가축분퇴비 구입비 보조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조합이 생산하는 가축분퇴비를 구입하는 조합원에게만 구입비 일부(포대당 1,200원)를 지원해주는 반면, ○○○조합 이외에 다른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가축분퇴비를 구입하는 조합원에게는 구입비를 지원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협이 ○○○조합이 생산하는 가축분퇴비를 구입하는 조합원에게 사실상 특별할인을 해주는 것과 다름없고, 이를 통해 ○○○농협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이 생산하는 가축분퇴비를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안내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생산업체(○○○조합)와 지원조합(○○○농협)간에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신고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피민원 농협에서 한 ○○○조합에서 생산한 가축분퇴비에만 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여 이를 신고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피민원 농협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할 퇴비의 물량을 결정하여 각 농협으로 배정해 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정책적 목적으로 물량을 결정하여 말씀 주신 지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사경제주체로서의 사업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지자체의 사업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상대방, 가격 등 거래조건과 거래내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가격결정, 거래조건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의 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케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감소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이하 '기타의 거래거절')로 보고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피민원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기타의 거래거절'이 되기 위하여서는 귀하의 행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거래거절이 공정

거래법 상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피민원 농협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민원 사업자가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택한 점, 타 사업자가 피민원 사업자 이외에도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계약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6. 이상의 답변이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위 답변은 귀하의 민원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9. OOO 선수금 요구 관련 문의

민원내용

현재 중랑구 ○○동에서 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그동안은 ○○○에서 담배를 주문하면 배송 후 몇 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부터 담배를 주문하면 선입금을 하고 2일 뒤에 택배로 배송을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에 밀려 소규모 점포들은 담배를 팔지 않으면 손님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이유가 적어져 판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담배는 판매이윤이 7~9%밖에 안 되는데 선입금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영업도 부진하고 먹고살기 팍팍해지는데 ○○○ 같은 독점 제조업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 능력도 없고, 다른 곳에서 국산 담배를 공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졌습니다.

2일 차이지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소규모 점주들에게는 1~2일씩 융통할 수 있는 자금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대출을 내어 대금을 결제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해서 또 벌이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최소한 배송일 당일 결제로 바꾸는 것까지는 공감 및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고 큰 회사의 갑질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고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피민원인 ○○○가 2023년 7월부터 일반소매점*에 대한 대금 결제방식을 후결제 방식(발주물 수령 후 결제)에서 선결제 방식(선입금 확인 후 익 영업일에 발주물 배송)으로 변경하였는바,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독점기업에 의한 일방적이고 불이익한 거래조건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편의점 이외의 소매점을 의미함

3-1.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하나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의 남용 - 불이익 제공)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87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3) 참고)

3-3. 피민원인 ○○○는 국산담배 독점공급기업으로서 국내 담배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점, 소매점주는 피민원인 이외의 국산담배 대체거래선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민원인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4. 다만,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민원인이 대금결제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일반소매점에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 피민원인은 외상 판매로 인한 미수금, 부실채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결제방식 변경하였음을 소명한 바, 피민원인의 행위가 소매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나. 피민원인은 약 6개월간의 사전 절차를 거쳐 소매점주의 동의서 수취 후 대금결제방식을 변경한 점

다.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외상판매를 하였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주문 가능 횟수를 기존(월 2~4회) 대비 확대(월 8회)하였으며, 피민원인이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일반 소매점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라. 편의점 본사 등 대형 법인사업자의 경우 상품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외상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일반소매점 역시 보증보험 가입시 외상거래가 가능한 점

5-1. 다만,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민원인의 일괄적인 결제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세한 소매점주는 단기 자금경색 시 재고가 감소하고 매출이 감소할 여지가 있는 데에 반해, 피민원인은 소매점주에게 위 4. 라. 의 외상거래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5-2. 이에 피민원인은 8월 중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를 진행하여 소매점주의 선택권 보장과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상거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민원인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보완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0. 제주 유류시장 불공정 및 ○○석유 불공정 상거래 질서

민원내용

제주는 불공정한 유류시장이다. 현물시장도 없는데 정부가 만든 알뜰주유소 ○○○ 전국 ○○을 묶어서 정유사 입찰제도 만든 후 각 ○○마다 ○○주유소를 만들어 제주 어느 지역 ○○주유소가 없는 지역이 없다. 그리고 알뜰주유소가 생겨나면서 그나마 대리점을 통제하던 정유사 지사들은 모든 걸 대리점 체제로 만들고 철수해 버렸다. 그리고 알뜰주유소 ○○주유소들과 대리점공급가 차이는 리터당 육십원 팔십원 차이나게 공급받는다. 왜 이런 시장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육지부는 정유사가 갑질을 못하는 시장이다. 알뜰이나 정유사 거래하는 주유소도 자기들 물량 오십프로만 받고 그보다 싼값인 것을 받는 구조다. 그러나 현물이 못 들어오는 제주 구조에서는 알뜰 ○○ 대리점만 돈버는 구조이다. 그리고 자기들 돈 버는 게 아닌 ○○은 어떤 때는 아주 싸게 팔아 대리점 거래하는 주유소를 장사도 못하게 만드는 시장일 때도 있다. 지금 ○○이 그렇다. 대리점 거래하는 주유소는 상상못할 금액을 판매가로 걸어 한 달간 이 가격으로 가겠다는 조합장 그리고 농가 면세유도 대리점 거래하는 주유소가 못하도록 자기들의 실권을 쥐고 대리점 거래하는 주유소가 공급하면 못하도록 물량 배정도 줄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줄여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리점 거래하는 주유소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오늘도 생활비만이라도 벌자는 생각으로 새벽부터 일어나 문닫을 때까지 노동을 한다. 그리고 ○○○정유사를 대리하는 ○○석유는 거래하는 주유소 도매가보다 직영 주유소 회장 사장 개인주유소를 통해 도매가보다 싸게 팔아 제주 대리점과 거래하는 주유소를 죽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이런 사항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말한다. 강한 자만의 살아남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물도 없는 시장에 알뜰 ○○ 대리점만 존재하게 만든 정부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와 ○○○석유는 알뜰가격에 공급한다고 구두로 말해 놓고 계약서에는 적지 않고 육지부 알뜰주유소나 ○○ 알뜰주유소 가격도 아닌 석유공사 알뜰고시단가에

○○ 운송하는 ○○○정유사에 운송비로 십구원을 주니까 석유공사 알뜰고시단가운송비 십구원을 더한 가격이 ○○ ○○주유소 가격이다 하고 준다. 그러나 그 가격에 받는 ○○ ○○주유소는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항의하니 등급별 사후정산까지 포함되다 보니 차이가 난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리점거래하는 주유소 모든 조건에 차이가 난다. 그리고 사후정산도 한다. ○○주유소도 앞에서 차이가 좀 나지만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후정산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유사 제주 총괄하는 대리점의 얄팍한 상술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사기행위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만든 이상한 제주의 유통구조는 정부가 알아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법은 운송비 때문에 현물은 못 들어온다. 육지시장 같은 구조는 못 만든다. 방법은 석유공사 알뜰주유소를 제주만큼은 조건에 맞으면 더 생기게 만드는 방법뿐이다.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의 정유사대리점이 갑질하는 곳은 제주뿐이다. 그리고 일프로도 안 된 시장에서 상상도 못할 이익을 뽑아내는 것도 제주뿐이다. 정부가 이런 왜곡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처리내용

1.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주지역 유류시장의 경우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알뜰주유소(○○) 운영자만 이득을 보게 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먼저 알뜰주유소 운영 방향 등 정책 관련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기관의 소관 법률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이라 함)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는“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알뜰주유소 운영 관련 정책 개선 사안 및 ○○석유 등의 유류판매가격 인하 행위가 석유사업법 제3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문의하여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당염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저히 낮은 가격'인지 여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제조원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만일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특정사업자의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신규 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등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부당염매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염매"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염매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경쟁제한성), 염매행위로 관련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할 가능성, 염매기간 및 실제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단순히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도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한다는 점만을 토대로 부당염매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50억원)인 경우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 및 ○○석유가 알뜰가격에 공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음에도 알뜰가격이 아닌 ○○○의 알뜰고시단가에 운송비를 더한 가격을 공급가격으로 적용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은 양 당사자 간 계약 관련 분쟁 사안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본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합니다. 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1. 유통법위반 갑질의심 ....

민원내용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중입니다.
공시지원금 15%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패널티가 5배정도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판매점에서 해주든 안해주든 자유인데 이것을 강제로 넣고 안 넣고 차이점을 두어서 패널티를 먹이는 거는 통신사의 갑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통법에도 이게 안 되는 걸로 찾아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기존에 저런 내용이 있는 걸 안내를 못 받았습니다.
패널티금액이 500만원입니다. 한달에 500만원을 못 버는데 너무 힘드네요.
○○○에서 거래대리점에게 500만원을 3340원씩 1497명 가입건에 대해 일일이 한건씩 패널티를 총 500만원 하달했고 이제 그게 저한테 오게 된 건데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패널티도 내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큽니다. 공시지원금 15% 안 넣었다고 5배나 더 나오는 걸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시지원금 15%는 개인 판매점 무조건 재량인데, 이거 관련해서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민원번호 : 1AA-2309-*******)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하 "피민원인")가 대리점에서 온라인 홍보 등을 수단으로 단통법에 위반되는 휴대폰 불법 초과지원금(이하 "불법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대리점에 건당 100~500만 원의 페널티(위약벌)를 부과하는 정책(이하 "불법보조금 페널티 정책")을 운영하고, 해당 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을 운영하는 귀하에게 패널티가 과도하게 부과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의 적용 여부는 거래개시 단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래계속 단계의 경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이 사안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① 피민원인은 대리점계약서 제34조, 제17조 등에 '공급받은 단말기를 이용약관의 근거 없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당국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넘는 범위의 경품,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바, 이에 따라 초과지원금에 대해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하여 추가지원금 상한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 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 ·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리점 및 판매점이 위 제4조 제5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피민원인이 위약벌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민원인이 ○○○○ 입력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유는 만연한 불법보조금을 일부나마 ‘양성화’하여 단통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추가지원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유통점들은 합법적 추가지원금을 활용하기 보다는 고객에게 자신들 고유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더 커보이게끔 하기 위하여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추가지원금을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하려는 유인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한 점

- 이에 더하여, 피민원인은 단통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통점이 합법적인 추가지원금을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이동통신사업자가 파악하여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으며, 단통법에 충실한 합법적 추가지원금 지급제도 정착 및 확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페널티 부과에 차등은 필요하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5. 다만, 피민원인은 ○○○○ 등록 여부에 따른 패널티 금액의 차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차등 폭이 과도한지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패널티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소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2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조합법인 통신판매업 생산자 허위 표시 및 광고가 위법인지 질의합니다.

민원내용

생산자 허위 표시 및 광고가 위법인지 질의합니다.

개요

제주도***주소*** 소재 대표 문**는 ○○○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각종 해산물을 통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를 통해 판매 광고를 하면서 1) 수산물인 경우 옥돔 갈치 고등어등은 수협을 통해 중매인에게 매입하여 손질냉동으로 판매를 하면서 생산자가 마치 한림에 사는 이모부 A,B가 자신의 소유한 000호 000호 어선에서 곧 잡은 고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그리고 2) 미역, 톳, 소라, 보말, 성게인 경우 등은 도내 각처에서 구입하여 손질냉동으로 판매를 하면서 마치 생산자가 이모인 해녀 세자매 문○○ , 문○○ , 문○○의 직접 채취한 것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하며 고객들로 하여금 통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질의

1. 전자상거래법

가. 위 1)과 2)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20) 농수축산물 3.생산자 표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다. 처벌은 되는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조합법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3.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 제3조(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의 금지)에 위반하고 처벌이 되는지
※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나. 제5조(표시 · 광고 내용의 실증 등) 위반인 경우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 ·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하여야 하는지.

4. 전자상거래법(과태료)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형과벌금)과 충돌시 어느 법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조합법인(이하 "피민원인")이 ○○○쇼핑에 입점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 사이버몰 '○○○' 운영과 관련하여 법위반 여부, 사업자단체 해당 여부 등에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이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거짓, 과장성, 기만성 등 여부, ②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소비자오인성), ③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

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거짓·과장 등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 ****, 대법원 20** ****, 67986 등).

5. 위와 같은 법리 등을 바탕으로 제출해주신 민원 내용에 적시하신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1. 우선 생산자 표기가 거짓으로 기재된 점과 관련하여 위임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각 품목군별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민원인이 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 고시 Ⅲ. 1. (20). 소정의 농수축산물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생산자 정보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품정보고시 Ⅱ. 일반원칙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제시와 함께 대체정보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피민원인이 직접채취와 더불어 수협 등 중매인이나 기타 판매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 생산자 정보가 수시로 변경되어 통신판매수단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 직접 수확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산지 경매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제공될 수 있는 등 생산자 정보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려는 상품의 정확한 생산자명을 확인하시려면 판매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자 정보 변동 가능성 및 대체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이 단일 생산자가 모든 상품에 대해 생산하는 것처럼 기재해 두었다면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해당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5-2. 다음으로 피민원인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하며, 피민원인의 경우 단일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형태의 법인사업자로 확인됩니다. 다만 「수산업법」 제8조 등에 따르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와는 그 성격과 설립목적이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3. 이어서 표시광고법 소정의 실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표시광고법 제5조는 사업자 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임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이하 '실증고시')를 통해 사안별 구체적인 실증방법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증고시가 직접채취 내지 직접생산 등에 대한 실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증'의 정의에 따라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그 실증의 방법과 근거자료는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4. 마지막으로 관련법령의 법조경합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32조, 제45조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고,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9조 및 제17조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형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등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처분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갖는 과태료와 행정형벌의 성격을 갖는 벌금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병과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판결 등), 우리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출한 법위반점수를 기초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6. 한편,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 등을 통해 피민원인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각 품목별 피민원인의 실질적인 생산 및 공급과정과 사이버몰에 기재된 내용 간 다소 상이한 부분(출하량에 따라 자체생산만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공급이 어려운 경우 일부 상품의 물량을 타 구매상 등을 통해 공급한 점 등)이 있었고,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표기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오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 5-1.의 내용을 안내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피민원인은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사이버몰 게시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생산자 표기 등을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문의사항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2. OOOOO

민원내용

○○○ 진흥원에 고발합니다.
2023년 [만원의행복]무료배송 999원 두피를 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감기는 늘어나지 않는 머리끝 세트 990원/케이스까지 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목의 상품
배송일 : 발송일 기준 3~15일 (영업일 기준)

해당 구매내용을 살펴보면 배송정보 우편배송 영업일 기준 발송 후 3~15일 소요 써있으며 당사자는 4월 30일 구매 후 5월 3일 발송으로 쓰여있으나 23년 5월 30일까지 제품을 받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우편 거래송장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했음.
3일 4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영업일 기준으로 19일 동안 제품을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 통화요청했으나 통화는 어렵다고 함. 환불 또한 배송을 이미 시작한 것이기에 해드릴 수 없다는 내용을 하며. 제품을 거의 한 달 동안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13-서울강남-00000호 ○○○은 홈페이지 자체에 (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어떠한 책임으로부터 회피 하기 위해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같은 경우에는 ○○○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는 엄연히 판매 중개자이기에 책임을 회피하고 구매상세페이지 내에 배송기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나 상위 부서가 없으며 지금 10만명이 넘는 소비자에게 허위 정보(배송일)를 기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 허위광고로 21401명이 구매를 한 제품이며 제재 부탁드립니다.
작은 돈이라고 사기를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온라인 오픈마켓 ‘○○○’에 입점한 피민원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기간을 3~15영업일로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매 후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상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인 ○○○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였음. 이는 부당함.”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재화의 배송 과정 중 파손·분실되었을 경우 보상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자가 우편배송의 경우 배송 중 발생한 파손, 분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한 문구가 부당한지 여부는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판매자가 재화를 발송하였는지 여부 등의 증명 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습니다.

4. 본 사안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인 ○○은 해당 상품이 결제금액에 따라 배송방식이 ‘우편/택배’로 나뉘며, 귀하께서 구매하신 상품은 2023. 5. 3.에 우편배송으로 출고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민원인은 상세페이지에 우편배송의 경우 배송

추적이 되지 않으며 배송 중 파손·분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사전에 고지한 바 있으므로 피민원인이 거짓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판매자이고 '○○○'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할 뿐 통상 구매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고,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을 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민원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써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3. 사기업체신고

민원내용

사기광고 업체 신고합니다.

1. 해당 사이트의 광고를 보면 8도의 온도가 다른 쿨링제품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만 온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제품 일회사용시 피부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도가 낮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제품 실제사용시 일시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고 금방 돌아오는데 타사의 쿨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적의 쿨링 온도는 왜 8도 인지 연구결과가 있나요?

2. 인체의 생체전류는 신경 전달과 관련된 신호는 몇 십 마이크로암페어에서 몇 백 마이크로암페어의 범위에 있을 수 있고, 근육 운동의 경우에는 몇 백 마이 크로암페어에서 몇 밀리암페어(mA)의 범위에 있을 수 있 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인체의 생체전류가 60㎂로 광고하는지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기재된 생체전류영상광고을보면 전류를 측정한 것이 아닌, 전압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측정값은 60㎂가 아닌 6.XX의 전압수치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전압과 전류를 구분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근거로 해당 영상과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동일 측정기로 해당 기기의 전압값 측정결과 첨부합니다.

3. 고주파 수치
   저희 제품의 고주파 출력은 약 180hz(180,000mhz)입니다로 답변을 해주는데, hz는 주파수치 중 가장 낮은 단위로 1mHz=1,000kHz=1,000,000Hz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지 소비자 기만입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컴퍼니(대표자 이**, 이하 "피민원인")가 운영하는 ○○○쇼핑 입점 사이버몰 '○○○'을 통해 '○○○ ○○○ 마사지기 고주파 얼굴 진동클렌저 뷰티디바이스(이하 '상품')를 판매하는 상품 게시물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하고(대법원 20** **** 판결),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대법원 20** **** 판결), 광고의 일부 표현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 ****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술적·사전적 의미, 관련 법 규정이 아닌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인상과 더불어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특성상 표현에 다소 과장성이 내재되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부당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여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첫째, 광고내용 중 득(得)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쿨링 온도가 8도' 및 '타사의 쿨링제품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만 온도를 저하시키지 않고, 제품 일회 사용 시 피부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도가 낮아진다.'는 취지의 광고표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피민원인은 학술논문 '냉온 자극의 다양한 온도

경계조건들에 대한 피부 내 온도 분포의 수치 해석(첨부1 초록 및 결론 부분 등 참고)'을 통해 단면적인 피부의 온도 상승 및 하락이 아닌 피부에 유효 자극 전달을 위한 역치값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광고내용을 표기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민원인은 해당 논문의 2-2. 지배방정식의 해법 부분을 통해 혈액의 온도와 진피층 온도의 차이 또한 역치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만의 온도가 아닌 피부 속의 온도를 하락시켜야만 혈액 온도에 의한 온도 유지를 최대한 피해 보다 지속적인 냉감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연구 결과 상 최소 역치값은 7도로 이보다 더 높은 온도는 진피층까지의 도달률이 낮다는 결론에 이르러 피민원인 상품의 특장점인 자극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가 위 논문 내용을 활용하기에 좋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을 강조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민원인은 해당 광고 부분이 지속적 온도 하락을 주장하는 설명이 아니라 냉열로 인한 자극이 적어 기존 피부 온도 복귀까지 타사 제품들에 비해 지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을 알려왔습니다.

5-2. 둘째, '인체의 생체전류와 가장 유사한 60㎂'광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피민원인은 학술논문 '근골격계병변과 통증에서 미세전류의 적용(첨부2)' 및 발명특허(첨부3 3페이지, 첨부4 2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문구이며, 위 논문 등에 따르면 사람의 경우 개개인의 신경세포의 수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1~60㎂, -70~50㎷의 생체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갈바닉 마사지기의 경우 EMS 근육운동기와 같이 근육의 발달을 위한 것이 아닌 얇은 피부인 얼굴의 굳은 근육을 자극 및 활성화시켜 콜라겐 형성을 돕는 목적을 지닌 상품으로 신경전달 및 신호전달 생체전류 범위와는 그 특성과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5-3. 셋째, 상품 게시물에 첨부된 전류 측정영상이 실제로는 전압기를 이용하여 측정 중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피민원인은 해당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고가의 측정기를 대여하여 실험하는 과정에서 촬영도 진행하였으나, 대여 시간 촉박 등의 사정으로 자사 제품의 1단계만 측정 가능했으며, 타사 제품의 경우 측정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 같아 반납하게 되어 해당 과정에서 얻게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류측정 결과로 전압을 보여주게 된 것은 해당 분야에 대한 피민원인의 정보가 부족하여 일어난 일이며, 피민원인도 민원인과 동일 측정기로 동일한 설정으로 측정해보아도 상품 페이지와 같은 수치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소명

하였습니다. 다만, 피민원인은 위 표기내용과 관련하여 수치조작 등의 기만적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고가의 장비를 여러 기관 등에 부탁해 빌려 사용해 보기까지 하며 정확한 측정값을 얻도록 노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해당 광고영상 부분 등은 게시물 수정작업을 통해 모두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4. 넷째, 2023. 5. 15. 피민원인이 상품 Q&A 게시판(문의게시판)을 통해 '저희 제품의 고주파 출력은 약 180㎐(180,000mhz)입니다.' 라고 답변한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헤르츠(㎐) 관련 단위 기준에 따르면 1메가헤르츠(㎒)=1,000 킬로헤르츠(㎑)=1,000,000헤르츠(㎐)=1,000,000,000밀리헤르츠(m㎐)로 확인되며, 피민원인은 위 단위기준에 따라 180헤르츠(㎐)의 1천분의 1 작은 단위인 밀리헤르츠(m㎐)까지 병행하여 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5. 마지막으로 피민원인은 주요 민원 내용과 더불어 기존 상품 게시물 내용을 재검토하여 구매하시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알려왔으며, 우리 위원회는 본 민원이 회신되는 시점에 피민원인의 상품 게시물 수정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6. 위와 같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피민원인의 광고행위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이 소비자를 기만,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그 내용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를 중대한 오인에 이르게 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준의 광고내용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문의사항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첨부자료 4부. 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4. OOO 주문시 다크패턴으로 금액변경 의심스러움

민원내용

○○○ ○○ 앱을 통해 주문하던 한매장의 메뉴 주문방법이 불공정으로 의심스러워 신고합니다.
○○○버거 and 치킨 대구○○○점에 ○○○ 앱을사용하여 주문할때 햄버거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초기화면은(예시:뉴욕버거세트) 8,300원으로 보이나 주문하는 메뉴로 들어가면 800원 추가된 9,100원으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매장에 문의해 본 결과 후렌치 후라이메뉴가 L에 기본체크 되어 그렇다 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추가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주문자(고객)의 선택사항이 아닌가요?
이렇게 주문을 받을 거면 초기주문화면도 9,100원 이어야 맞지 않을까요.
기본금액(8,300원)의 주문을 원해 들어가 금액 변경분을 인지하지 못하면 800원 인상된 9,100원으로 주문금액을 결제하게 만드는 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선택사항을 기본으로 두어 추가금액의 결제를 유도하는 건 다크패턴으로도 보여집니다.
추가금액의 발생을 미리 고지 하든지 추가금 없는 기본요금이 먼저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큰 금액은 아니나 고객을 속이는 것 같아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 고발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버거 대구 대구○○○점'이라는 상호로 ○○○을 통해 햄버거 등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이하 "피민원인"이라 함)가 햄버거 세트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메뉴 소개 화면에서는 기본 옵션 가격(햄버거+후렌치후라이 기본 사이즈)을 표기해놓고, 구매 페이지에는 추가 옵션(후렌치후라이 L사이즈)이 체크된 상태로 기본 설정해 둠에 따라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옵션을 주문하게 되므로 이것이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21조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였는지,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 7. 31.「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그 내용이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크패턴'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다크패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4.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민원인은 2023년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세트메뉴를 선택 방법을 계속 변경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초에는 빵종류를 '브리오쉬 번'으로 하고 사이드를 '빅 후렌치 후라이 기본 사이즈'로 단일화 하여 판매하다가, 고객들의 의견(매장 주문 시에는 일반 번으로 선택되어 가격이 700원 저렴한데 배달주문시에는 브리오쉬 번으로 자동선택되어 가격이 더 비쌈, 빅 후렌치 후라이라고 하여 양이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후렌치 후라이 한 개의 사이즈가 큰 것이고 양은 적음)을 반영하여 현재는 메뉴 선택란이 세분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햄버거 세트메뉴 주문 시 소비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곳은 모두 5 군데로, ① 빵 종류 선택란 ② 토핑추가선택란 ③ 토핑빼기 선택란 ④ 사이드 선택란 ⑤ 음료선택란의 5가지를 확인한 후 주문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주문 구조 및 변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햄버거 세트 제품의 경우 토핑 추가 선택란, 사이드 선택란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각각의 선택란을 살펴보게 되는 점, 선택란 체크가 끝나면 최종 가격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민원인이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였다거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피민원인이 일정기간 햄버거 세트메뉴에 추가옵션이 선택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5. 다만, 피민원인에게 연락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면서 특정옵션 사전선택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고, 피민원인은 이에 따라 2023. 9. 4. 기준 추가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며, 본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비자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5. 해외배송 아닌 상품인데 불구하고 빠른 해외배송을 광고하면서 개인통관부호 수집 및 고액의 배송비 착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내용

명목상 해외배송사업자로 등록은 하였지만 실질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실제로는 국내 배송이므로 빠를 수 밖에 없는 배송기간을 해외배송임에도 빠르다라고 광고하면서 해외배송사업자 등록이라는 변칙적 제도 이용으로 해외배송이 아닌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개인통관부호를 수집하고 고액의 해외배송비를 부과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실상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쇼핑 입점사업자 '○○○ BOY HK'(대표자 CHA ** ***, 이하 "피민원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 ○○○'에서 판매하는 전자담배 상품과 관련하여 해외배송이 아님에도 해외배송료를 부과하고 고유통관부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 소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민원내용에 대해 피민원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피민원인은 해외 공급처로부터 전자담배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주문 접수 후 해외 수입사에 발주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수령한 상품의 불량 발생 가능성과 시기별 공급사 사정에 따른 지연배송 이슈 등에 대비하고자 발주 시점의 고객의 주문량보다 일정 수준 초과하는 규모로 상품 발주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되는 상품 중 ① 발주 당시 주문고객에 대해서는 해외 공급사로부터 곧바로 해외배송→국내배송의 과정을 거쳐 고객에게 발송처리 되고, ② 주문량 대비 초과로 공급받은 나머지 상품들은 피민원인이 수령 후 국내에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해당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 피민원인이 보유 중인 상품을 국내배송업체를 통해 상품이 바로 전달하여 발송되는 것으로 귀하의 상품은 ②에 해당되는 사례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5. 위 4.의 ② 같은 공급방식에 따라 피민원인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발송하는 상품 역시 피민원인이 수입 과정에서 상품의 배송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이후 국내배송업체를 통해 발송되는 상품 배송비용도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피민원인이 고객이 부담하도록 책정한 배송료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대비 부당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내용은 피민원인이 발주 과정에서 선 지불한 주문서(Invoice), 주문상품 및 배송비용 청구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① 해외직구는 국내상품 대비 원거리에서 장시간에 걸쳐 국내로 반입되는 특성이 있는 점 ② 이를 수입하는 판매자의 경우 직구상품의 오배송, 불량 등 사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일정 부분 대비가 필요할 수 있는 점 ③ 상품의 실질적인 유통경로가 해외 수입인 점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점 ④ 배송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책정 등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적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량의 영역인바, 피민원인의 유통과정 및 발주, 수입 내역 증빙 등을 통한 사실관계 설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민원인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된 사실일 알리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다만, 귀하의 구매 건과 같이 귀하의 고유통관부호의 실질적인 사용이력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운송장 조회결과도 국내배송업체를 통해 곧바로 발송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수령하신 귀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는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은 오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고객응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8. 한편, 개인의 고유통관부호가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매 건에 대해 요구되고 수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법령을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개인통관부호 도용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관세법」 및 그 위임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의 소관기관인 관세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귀하의 문의사항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6. 쇼핑몰 과대광고

민원내용

인터넷 쇼핑몰 ○○○(○○○)에서 물건 주문시 ○○○는 모든 상품 무료 배송이라고 기재되어 주문을 했습니다. 결제 후 ○○○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에서 연락 오기를 제주도는 추가배송비를 보내줘야 배송이 가능하며 주문정보에 추가 배송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문결제 ○○○는 모든 상품 무료 배송이라고 표시되어 사람을 현혹시켜 주문하게 만들고 나서 입점 업체 통해서 추가 배송비를 받는 건 허위광고라고 생각하여 신고합니다.
○○○는 모든 상품 무료 배송 문구를 삭제하시든가 수정 조치 부탁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식회사 ○○○(대표 서**, 이하 '피민원인')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 사이버몰(앱) '○○○'의 배송정책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 소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사업자에게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의 배송비 상한액이나 배송비용의 부과 주체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금액 또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상품의 특성 및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에 따라 사업자가 경영상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민원내용과 같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재화 구매를 전제로 무료배송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서산간지역 배송 등에 따른 추가 배송비용 발생 및 그에 대한 청구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제 전후로 명확하게 확인 가능하여 소비자가 구입 전에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면 단순히 입점사업자인 통신판매업자가 도서지역 등에 추가 배송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광고문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피민원인의 사이버몰의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안내를 상품게시물 하단 별도의 '주문정보' 탭을 통해 명확하게 기재하여 산간벽지, 도서지방의 경우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되어있는바, 이는 거래 전후로 소비자가 충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료되어 피민원인 사이버몰의 무료배송정책 및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사항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다만,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체 ○○○에게 상품게시물 전면부 '○○○는 모든 상품 무료배송!'이라는 문구 하단에 추가적으로 '도서산간지역 등의 경우 입점판매자가 추가 배송비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배송비용과 관련하여 보다 소비자의 인지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03

가맹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채용 또는 도급/위임계약의 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민원내용

가맹점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타인과 위임/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맹본부가 그 조건을 특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을 특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가능하다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먼저, ①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업원 채용, 위임·도급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 계약의 내용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법령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자율적 의사의 합치에 의한 사항이라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다음으로 ②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정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의 '표준정보공개서'에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이라면 정보공개서에도 기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5. 참고로,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의 답변 내용은 민원내용에 드러나 있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2.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행된 시행령 내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정보공개서와 사전에 함께 제공하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 제공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맞다고 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처럼 계약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카톡이나 문자로 함께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2. 시행령 13조의6 2항에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시에도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의 자필확인서나 발송시간 수신시간 확인 가능한 방법 등 근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인지요?
준용이라는 것이 제공하는 방법(직접, 내용증명, 온라인게시, 전자적방법)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보공개서와 동일하게 근거자료까지 확보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변경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6조 1항 마지막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가 취해야 한다로, 1항 4호에도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가 해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변경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즉, 법 및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여야 한다와 해야한다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할 때의 방식을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 나)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시에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발송·수신시간 확인 가능한 근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지, 다) '~하여야 한다'와 '~해야 한다'의 법리상 해석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은 상기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면 되므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와 가맹계약서 또한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수신 시간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13조의6 2항(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하되, 제6조 제1항 3호의 후단은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통보함에 있어 제6조 제1항 3호의 방법을 준용할 경우 특정 가맹희망자가 통보 내용을 읽어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6조 제1항 4호의 방법을 준용할 시, 전자적 파일의 발송 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하여야 한다'가 '해야 한다'로 변경된 이유는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부자연스러웠던 '하여야'를 '해야'로 개선하고자 하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시행 조치를 따랐기 때문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해석상 차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의 답변 내용은 민원내용에 드러나 있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신고 및 가맹계약해지요청

민원내용

1. 허위과대광고
2. 적자로 폐점하는 점주들에게 가혹한 위약벌 부과
3.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음.
4.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 협박
5. 영업지역침해로 매출감소에 영향을 주는 보복행위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이하 “피민원인”이라 함)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사업 관련 광고를 하면서 매출액에 대해 허위광고를 하였으며, 적자로 폐업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였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영업지역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피민원인의 허위사실 유포, 협박 등의 사안은 형법 적용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또한,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울러, 법 제12조의6(광고 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내역 통보)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첫째, 피민원인이 매출액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안은 법 위반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드리겠습니다.

* “전 지점 맛집랭킹 1위” 광고의 경우 법 제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둘째,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하여 귀하가 제출한 가맹계약서에 의하면 귀하의 영업지역은 귀하의 매장 기준 반경 1.5km로 설정되어 있으며, 귀하의 매장과 ○○○ 동구점 간 거리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점으로 볼 때, 피민원인이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등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법은 다른 가맹사업자가 귀하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피민원인에게 그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하는 2023. 3. 판촉행사를 실시하여 사업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바, 법에 규정된 통보 기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민원인이 적자로 폐점하는 다른 가맹사업자들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은 ①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피민원인이 다른 가맹사업자들이 적자로 폐점하는 경우에도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중한 위약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울러, 귀하는 해당 사안 관련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본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4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하도급업체 퇴직급여충당금 정산관련질의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업체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발주처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발생한 간접노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원도급업체에게 통보를 하여 원도급업체도 발주처에서 정산을 안해주어 저희 하도급업체에게도 정산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신 질의(1AA-2302-*******)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발주자(한국전력공사)에 의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지됨
   - 수급사업자인 귀사는 공사중지기간 중 발생될 간접비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에 재투입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상주인원이 발생

- 상주인원은 도면확인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이에 따라, 공사중지 기간 중 발생된 간접비 정산을 요청하여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은 지급완료
-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아 원사업자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음

Q.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비용(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2-1. 먼저, 질의와 관련하여 모든 위탁거래가 하도급법 규율 대상은 아니고 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원·수급사업자 요건 및 하도급 거래 요건 등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도급법 등에서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4. 위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 추가비용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을 하였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주자가 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을 경우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대금 증액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에서는 제14조에 따른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에, 질의하신 발주자의 퇴직급여충담금 지급 의무 관련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쪽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유선상으로 알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는 공사중지 기간동안에 인원 투입을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인원을 투입하였고, 그에 따라 민원업무 또는 도면확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약에는 없는 부분을 위탁을 한 것이기에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호. 나. 에서도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하도급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계약 추정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위의 답변내용은 민원내용에 드러나있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6.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2. 납품단가연동제 실무 적용에 관한 질의사항 회신 요청의 건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23. 10. 4.) 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1. 사안의 배경

저희 회사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의 지위에서 거래 대상 수급사업자와 ①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② 위탁 목적물의 물품명, 단가, 물량 등의 기재사항이 없고, ③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들로 구성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거래계약에서는 별도의 개별계약을 통해 물품의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비로소 제조위탁의 목적물이 정해지고, 물품명 및 사양서, 단위 당 단가를 정하는 '단가 결정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하게 됩니다.(보통 단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며, 단가 합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본거래계약이 종결되더라도, 단가합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가만이 정해질 뿐 해당 단가에 따른 위탁 요청 수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과정에서 특정 수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가 결정 합의서를 체결한 후, 필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목적물의 수량, 납품기한 등을 정하는 이른바 PO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급사업자는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 저희 회사의 구매시스템에서 해당 PO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생산에 착수

하게 되며, 최종 목적물을 PO에 기재된 납품기한 내에 저희 회사에 납품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특정 목적물의 제조 위탁에 있어서,

1) 기본계약서 (일반계약조건만 존재)
2) 단가결정 합의서 (목적물의 물품명, 위탁상세사양, 품목 별 단가 존재)
3) PO (구체적 수량, 발주일자, 목적물의 인도시기)

3가지의 계약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1)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2호에서의 '하도급거래 기간'을 상기 ① 「기본계약서」의 계약기간, ② 「단가결정합의서」의 단가 유효 기간 ③ 「발주 주문서」 상 개별 수량의 발주일로부터 인도시기까지의 기간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
2)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3호에서의 '하도급대금' 액수를 판단할 때, 「기본계약서」 및 「단가결정합의서」의 체결 시점에 전체 하도급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하도급대금'의 액수를 「PO」 기준 단위로 판단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예컨대, A물품에 대한 단가가 개당 1,000만원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11월에 6개에 대한 PO를 발급하고, 12월에 또 다시 6개의 PO를 발급한 경우에도 동법 제3조 제4항 본문의 연동제 관련 사항 서면 기재 의무 면제가 유효한지 여부)
3) 상기 2) 사항에서, 만약 「PO」 기준 단위로 '하도급대금'을 판단이 불가능하다면, 납품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제3조 제4항 제3호의 '1억원 이하' 금액 범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4)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거래계약서에 거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연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법률 부칙 제2조 상의 '이 법 시행 이후 체결 · 갱신되는 하도급계약'의 기준을 상기 단가결정합의서의 체결 · 갱신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여부
5) 만약 4)의 기준을 단가결정합의서의 체결 ·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단가결정합의서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 지속 갱신되는 형태인 경우라면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갱신 역시 부칙 제2조 상의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 법 시행일 이전 체결된 단가결정합의서가 유효한 상황에서, 기본거래계약서의 일반 조항이 일부 변경체결된 경우에도 부칙 제2조 상의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7) 시행일 이후 기존 단가결정합의서 상의 일부 단가를 변경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하고 기존 단가결정합의서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부칙 제2조 상의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8) 만약 7)의 변경계약 체결을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야 한다면, 법 시행일 이전 체결된 단가결정합의서에 A품목과 B품목이 함께 있다가 법 시행일 이후 A품목에 대해서만 단가변경합의를 한 경우, A뿐 아니라 B품목 역시 연동제 관련 사항 기재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기타사항

납품단가연동제 시행과 맞물려, 내부 계약 프로세스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거래 조건에 따라 어떻게 상기 예외조건을 적용해야 할지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여 주신 질의(1AA-230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1) 기본계약서, 2) 단가결정 합의서, 3) PO에 대해서
   Q1. 어떤 계약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Q2. 하도급대금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PO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는지
   Q3. 납품 수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동제 적용예외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Q4. 단가결정합의서를 기준으로 연동제 적용 대상인 하도급계약을 판단하면 되는지
   Q5. 단가결정합의서의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 갱신된다면 부칙 제2조 상의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Q6. 기본거래계약이 변경된 경우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봐야하는지
   Q7. 단가결정합의서가 변경된 경우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봐야 하는지
   Q8. A품목에 대해서만 단가변경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상 함께 기재되었던 B품목도 연동제 관련 사항 기재의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수리 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을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 ·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위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A1.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은 1건의 하도급거래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개별 계약(발주서 등 포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계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연동제 대상 여부(계약 체결시점,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 판단시)를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계약의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계약에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이 모두 기재되고 개별 계약은 수량 통제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반면, 기본계약에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개별 계약으로 위임하여 개별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전부가 확정되는 경우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다만,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의도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사항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단가결정합의서에 위탁의 내용, 단가 등이 있고 PO를 통해 단지 수량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즉 하나의 거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가결정합의서를 기준으로 연동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거래 기간을 판단할때에도 단가결정합의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A2. 위의 설명에 이어서, 하도급대금을 판단할때에도 단가결정합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을 산출하여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가결정합의서에 예상 납품 대금,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가결정합의서를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연동 약정의 예외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가결정합의서만으로는 수량 특정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개별 계약(PO)건별로 거래상황이 크게 달라져 연속성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별 계약을 기준으로 연동 약정의 체결 시점,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A3. 앞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거래관행, 수요예보 등을 토대로 예상 물량을 산출하여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가결정합의서에 예상 납품 대금, 최소 발주량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물량에 대해 당사자 간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물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A4. 기본거래계약서에 하도급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바가 없이, 개별 계약으로 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기본거래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위탁의 내용, 단가, 수량 등)을 담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사안의 경우에는 단가결정합의서가 실질적인 계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A5. 자동연장 조항이 있어 1년마다 지속적으로 갱신된다면, 갱신될때 하도급법 부칙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A6. 기본거래계약서의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따라서 사안별로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거래계약서의 실질적인 부분이 변경되어 단가결정합의서도 이에 따라 변경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체결로 보고 연동제 적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A7. 대금 등 목적물 외의 다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가 크게 변경되거나 위탁의 내용 등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과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결한 계약으로 보아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를 따져야할 것입니다.

A8.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목적물별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A품목에 대한 계약 변경 사항이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B품목에 대해서는 조건이 동일하게,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라면, A품목에 대해서만 법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연동제 적용여부 판단 및 연동제 관련 사항 기재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위의 검토결과는 민원내용에 드러나있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질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5

방문판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방문판매신고의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차량판매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에 대한 의문사항이 생겨 해소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1. 기본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여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자동차전시장에 방문을 하여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면 자동차전시장에서 차량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시간적여유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자동차전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않는 경우 고객들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이 있는 곳 혹은 고객이 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장소로 만남약속을 한 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고객이 있는곳 혹은 약속장소로 나가 고객이 원하는 차량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그 상담에서 바로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고객이 있는 곳 혹은 약속장소로 나가 고객이 원하는 차량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고객이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법령이 적용될 경우 신고절차

만일 위와 같은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의 행위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방문판매업의 신고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하나의 법인 산하에 여러개의 자동차전시장이 존속하는데 이 여러 개의 자동차 전시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나와 있는 경우

가. 하나의 법인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면 되는지?

나. 각각 자동차 전시장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다. 자동차판매영업사원 개개인에 대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3. 신고 시 비용발생의 여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방문판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지 질의드립니다.

4.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의무에 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또는 벌칙조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방문판매신고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 또는 벌칙조항이 존재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른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방문판매법 제2조제1호는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 등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확정적인 구매 의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원의 구매 권유 없이 계약 체결만을 위해 판매원의 방문을 요청한 경우라면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였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방문판매업 신고 의무는 방문판매법 제2조제2호의 "방문판매업자"에게 있으므로 각 전시장이 "방문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각 전시장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방문판매업 신고 의무 이행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문판매법 제6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판매법령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2.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에 추가 질문

민원내용

보내주신 답변에서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재 질문을 드립니다.

회원가 ***의 경우, 할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여 후원수당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품 판매를 1+1 으로 할 경우도 할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아닌가요?

1+1의 경우 특정 판매원이 아닌 모든 판매원에게 판매할 경우, 할인 판매임에도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의 경우도, 특정 판매원이 아닌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함에도 후원수당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기존에 질의하셨던 다단계판매업의 판매가격 이원화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 판매원이 아닌 모든 판매원에게 동일한 할인 혜택이 제공됨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상 후원수당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에서는 후원수당을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4. 위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가격 할인은 라목의 판매활동 장려금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가목에서 정의하는 자신의 거래실적과도 연관이 있어 후원수당에 포함됩니다.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Ⅲ-4.-(5) 참고

5. 질의하신 판매가격 이원화의 경우, 할인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에만 일어나므로 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 할인 판매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문판매법 제2호 제9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 이상의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6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민원제목

1.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의 구분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소비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Q1.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와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구분

Q2. 공업사에서 미션오일을 구매하여 판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공업사의 작업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Q3. Q2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고체연료를 손님들의 음식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1)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와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구분, 2) 공업사의 작업자가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자에 해당하는지, 3) 식당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생활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임에도 “소비자”로 인정되려면 생산활동을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물품 또는 용역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비자”에 해당하며, 소비자성이 인정되는 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와“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간 구분에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업사에서 미션오일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자가 생산활동을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업사의 작업자 역시 공업사의 사업활동을 위해 미션오일을 구매하는 것이고, 자신이 소비하기 위해 미션오일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식당에서 음식 온도 유지를 위해 고체연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리에 필요한 원재료 및 그 준비과정에 필요한 자본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생산활동을 위한 “업무의 보조용”으로 구입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종업원이 그 자신을 위하여 고체연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업무를 위해 구매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종업원의 지위를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기본법

민원제목

2. 공정거래, 소비자분쟁 관련 - 예식장 취소 시 위약금 요청

민원내용

2022년 5월 14일 예식장(○○○)을 계약하고(첨부 계약서), 개인 사유로 결혼이 취소되어 2023년 1월 12일 해당 예식장에 유선으로 취소를 요청함.
그러나 예식장측에서는 2023년 금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위약금(결혼식 총비용(할인적용)의 10%인 163만원)이 발생한다고 함.
계약서 내용에는 90일 이내(2022년 1월 29일)부터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현재는 위약금 발생 이전)
예식장 측에서는 계약서가 이전에 작성되긴 했으나 소비자 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임.

본인이 소비자 보호원(1372)에 직접 문의해본 결과, 계약이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서를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음.
이제 예식장 측에서는 공정거래법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원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이고 공정거래법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최근 별표 첨부 확인해보면 계약금 환급하고 총비용의 10% 배상으로 되어있으나,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고 계약서 자체도 내용이 다르기에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만 잃고 끝내거나, 정말 소비자 분쟁해결 내용대로 계약금을 환급받고 총비용 10%를 다시 배상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1월 29일부터는 90일 시점이 지나므로 이전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이후 진행 절차 도움 부탁드립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3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예식장 계약을 취소 요청하였는데, 사업자는 올해부터 소비자법이 바뀌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해당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서가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약관이 무효로 볼 정도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급 환급시점을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변경한 것은 올해가 아닌 2020. 9. 29.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성이 있는 법률이 아니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대로 위약금을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양 당사자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당사자 일방이 불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6.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를 기초로 작성되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비자정책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07

표시광고법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표시광고법 관련 문의

민원내용

옥외광고, 인쇄물 등에 '누적판매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광고 특성상 영역이 제한적이다 보니 필수 요소만 넣으려고 하는데요.

누적판매수라 함은 현재까지의 총 판매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인쇄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 판매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인쇄에 찍힌 누적판매수보다 실 판매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기간을 넣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을 하는 요소는 아닐 것 같은데 표시광고법상 집계기간을 넣지 않는 것이 위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옥외광고 및 인쇄물 등에 '누적판매수' 광고 시 집계기간을 기재 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법 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3.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에 따른 표시광고 규제업무는 사후적으로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사업자의 표시·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제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가 있으며,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누락'이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하고, '은폐'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축소'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표시광고법 상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보가 은폐·누락·축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① 은폐·누락·축소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② 은폐·누락·축소함으로써 광고내용의 전후 맥락과 광고 전체 내용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나 상품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지, ③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위원회는 ㈜○○○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하였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바 있습니다.(2022.2.18 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자료 참조)

마. 귀하는 '누적판매수'로 광고하면서 집계기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광고 이후 실 판매수는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하셨으나 어떤 상품이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얼마의 누적판매수를 기록하였는지 등은 소비자가 해당물품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로 보여집니다.

4.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롤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2. 사업소재지 주소 변경에 따른 유통판매자 표기 유예 관련 문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 제품기획파트 표**입니다.

사업소재지 주소지 변경 예정으로 관련 법령 문의 드립니다.
주소지 변경시 기존 제조 제품 패키지의 인쇄 되어있는 유통판매업자 주소지 변경 유예 기간 문의드립니다.
변경시 기존 제품들 판매 가능 시기 문의드립니다.

해당 제품: 전기제품, 생활용품 등

처리내용

1.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유통판매업자 주소지 변경 시 기존 제품(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 가능 시기에 대해 문의하셨으며 공정위 소관 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사업자 자신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혹은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표시광고법 제4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리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요정보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 함)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유전자변형물질, 상품권, 소비자안전), 10개 업종(1. 제조업, 2. 도매 및 소매업, 3. 부동산업 및 임대, 4. 운수업, 5.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교육서비스업,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 기타)별 중요정보 등에 대한 표시·광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라. 중요정보고시에서 전기용품 제조·판매업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을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개별법에서 정한 규정의 유무는 해당기관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위원회 소관 법령에서는 유통판매업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기존 주소지가 인쇄된 제품의 판매 가능 시기를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바. 공정위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거짓 ·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할 정보의 종류를 품목별로 나누어 고시하고 있습니다.

사.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원 등의 정보에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 : 전자상거래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 다음으로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필수 정보제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소비자가 상품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상품 정보제공 고시 운용 목적상, 품목별 필수정보는 대부분 상품 실물에 표시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용 전기제품의 경우 1. 품명 및 모델명, KC인증정보, 정격전압, 소비전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동일 모델의 출시연월,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제조국, 크기, 용량, 형태, 추가설치비용,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온라인상에서 변경된 주소 정보를 기재하고, 추가적으로 판매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받게 될 실물 상품에 기재된 주소가 온라인상 표시된 주소와 다른 상품이 발송된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롤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8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규모가 있는 일반마트에 커피숍의 특약매입계약 가능 여부

민원내용

공정거래법 및 심사지침에는 특약매입거래가 정의되어있으나 가능한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커피숍이나 베이커리 등은 일반마트에 임대차계약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마트에서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특약매입은 발주를 하고 상품을 매입해서 검수검품을 하여 상품을 판매한 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계약인 걸로 아는데, 커피숍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커피 원두로 커피를 즉석 제조해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완성되기에 마트에서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닌데 특약매입계약이 가능한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308-*******)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규모가 있는 일반 마트에 커피숍을 입점하고자 할 때, 특약매입거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에 앞서 유선전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약매입거래 형태에 관해 규정이 명시된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통업자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이거나 혹은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에 속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4. 대규모유통업법은 제2조 제5호에서 “특약매입거래”를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특정 업종이나 상품 등을 특약매입거래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5. 따라서 상품특성, 거래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거래 형태를 특약매입거래로 할지 혹은 매장임대차 등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지, 수수료 등 상품판매대금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6.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거래 형태 등을 불이익한 수단을 동원하여 납품업자에게 강요하거나 계약기간 중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9호 및 제10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09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대리점 개설 문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대리점 공급업자 업무담당자입니다.
자사는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점끼리는 권리금을 주고 대리점 영업양도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대리점끼리의 암묵적인 영업지역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 타사의 대리점 갑질 사태가 터지면서 자사도 이를 본보기로 조심하고 있어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대리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리점은 6년 정도 대리점을 운영 중인데 6년간 한 번도 자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리점주는 매출이 안 나와서인지 투잡을 하고 있어 대리점 영업활동을 미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정상 영업시 얻을 수 있는 추정매출의 1/19 정도 매출).
이 상황에서도 자사는 대리점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근에 지속적으로 신규 대리점 개설 제안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사로서는 인근에 지속적으로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이 기존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이 되어 시장지위적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지 염려가 되고 한편으로는 신규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거절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1.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해도 될까요? 개설할 수 있다면 기존 대리점에 취해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2. 대리점 개설 절차나 적정대리점 수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까요?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306-*******)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기존 영업 중인 대리점이 있는 상황에서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하는 행위가 기존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이 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선 대리점 계약 체결 시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그 자체가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이 설정된 영업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도록 강제하거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해당되어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기존 대리점 근처에 신규 대리점 또는 직영점 등을 개설하는 이른바 “근접출점”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와 일정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취지로 체결한 계약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리점법 위반 사항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 다만 위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0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조건 관련 문의

민원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중도금 2, 3회차 금액은 전액 연체를 하고 1회차는 일부 납부를 한 경우 계약해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계약금 97,530,000원 중 전액 납부
중도금 1차 97,530,000원 중 82,470,000원 납부
중도금 2차 97,530,000원 미납부
중도금 3차 97,530,000원 미납부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제1~3회의 중도금 납부기일 중 제1회 기일에만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일에는 미납한 경우, 여기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약관의 한 종류인데,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 공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약관규제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사업자는 자기가 원하는 경우 표준약관을 자기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에 기존의 표준약관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표준약관의 내용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4. 귀하의 사안에서 표준약관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매도인은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납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위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약관조항을 해석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은 약관에 대한 추상적 통제만을 하는 우리 위원회의 약관규제법 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 약관의 해석이나 약관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6. 참고로, 기재해주신 민원 내용은 총 2회 중도금을 미납한 것으로서,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제 최고 요건인 '계속하여 3회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개별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가 아닌, 민법에 따른 법정해제사유(이행거절, 이행불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7.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8.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의 한계로 말미암아 부득이 귀하의 질의에 위와 같이 답변 드리는 점 이해부탁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1

할부거래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민원제목

1.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관한 내용

민원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받는 상조회사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은행 2곳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향후 은행 1곳은 유지하고, 1곳은 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의 4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항의 내용을 보면 '법 제1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들의 해지, 만료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 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어, 은행 1곳의 계약 해지일 1개월 전에 제출을 해야 되는지요?

또한, 채무지급보증 해지가 되는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던 회원에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6항과 7항에 따라 유지되는 은행으로 지급보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알릴 의무가 있다면, 변경 후 언제까지 발송을 해야 되고, 발송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중 일부 기관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계약해지로 인하여 지급의무자가 변경된 소비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여러 곳 중 일부만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1개월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또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및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지급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급보증계약 해지일 1개월 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의무자가 변경된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5.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